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김창학	대령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혐의 및 절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관련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김창학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군사경찰 병력 출동과 국회의 기능 제한 여부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인근 군사경찰 병력의 출동·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고 공동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징계로 파면된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은 군사경찰 병력의 국회 인근 출동을 문제 삼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병력 출동이 있었다는 주장과 직접적인 국회 활동 방해 여부는 각각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군사경찰단에 실제로 내려간 출동 지시, 국회 주변 도착 시각, 차단·검문·인원 통제 여부, 상급자의 명령을 어느 범위에서 수정하거나 집행했는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관련 무전·상황일지와 현장 영상이 중요합니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병력 이동 자체만으로 모든 형법상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막는 목적을 인식한 물리적 차단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명령과 실행, 인식과 결과를 분리하여 심리해 주십시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87조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의 유형 구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휘관이 내린 구체적인 출동·대기·진입 명령과 국회의원의 출입 또는 국회의 기능을 제한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군사경찰단 상황일지, 출동 병력·차량 기록, 국회 주변 CCTV, 부대원·현장 경찰 진술, 철수 명령의 시점을 상호 대조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개별 병력의 행위가 지휘관의 구체적 지시에서 비롯됐는지와 현장에서 실제 집행된 강제력의 정도를 살피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확인된 관여 범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군사경찰 병력 출동과 국회의 기능 제한 여부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김창학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9.18 뉴시스 | 군 관계자 8인 결심공판·구형·방정환 최후진술